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30
----------	------

2022년 3월 28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3월 10일, 강동길 의원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16일
다. 상정일자: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년 3월 28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강동길 의원)

- 가.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및 주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확충·강화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충전시설 등의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시책과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임대료 경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 규정을 신설함.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을 규정함.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수,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충전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
-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및 주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강화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22.1.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확대·강화하는 것임. 세부 내용은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을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의 주차대수 시설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0.5~3%에서 2~5%로 강화하는 등 전기차 충전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범위의 최소치이므로, 향후 전기차 보급 동향을 고려하여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기축 시설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규정대로 시설 설치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 강화 주요 내용>

구분		기존	개정	
의무 대상 시설	①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총주차대수 100개 이상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②공동주택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③공영주차장	총주차대수 100개 이상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의무 설치 비율	신축 시설	전용주차 구역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충전시설		규정없음 (주차장법에서 총주차대수 5% 이상 규정)
	기축 시설	전용주차 구역		규정 없음
		충전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 안 제3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3조의2제4항은 시책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 시의회 보고, 안 제7조는 충전시설 등의 지원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 안 제7조의5는 충전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의 확대, 충전 접근성의 향상, 업무 추진 절차의 정당성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축조 또는 축조 중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 규정을 부칙에 두어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1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 사업 지원, 충전료 징수 등 단순 업무의 위탁에서 벗어나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주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상위 법령^A의 개정 사항 중 조례 위임 주요 조항>

법 제11조의3(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생략)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생략)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A: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기축조 또는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130
----------	------------

제안년월일: 2022년 3월 28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축조 또는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설정 (안 부칙 제2조)
- 기축조 또는 축조 중 영구시설물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규정 (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영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
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영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3년
다. 가, 나목 외의 시설: 2년
-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제3조(영구시설물 축조 사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생략)	부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영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영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3년 다. 가, 나목 외의 시설: 2년 2.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제3조(영구시설물 축조 사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u>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u>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주차단위구획을”을 “구획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충전시설”을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제3조의2(중전의 제3조)로 하고, 제목 “(책무)”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보급 촉진에 관한”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때, 시민들”을 “때에는 시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과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이의 충전시설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0조의 규정”을 “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운영하는”을 “설치·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혼잡통행료

제7조의 제목 “(충전시설 설치 등)”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공동주택 등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으로, “금융”을 “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간”을 “연간 사용료 및”으로, “한다.”를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6항(중전의 제5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충전시설 설치대상)”을“(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18조의4제1호”를 “영 제18조의5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설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전시설”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필요한 충전시설”을 “충전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전용주차구역의 수

제7조의3의 제목“(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를“(전용주차구역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 자치구,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 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7조의4의 제목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충전시설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충전시설의 개방) 시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가 구축·운영·지원하는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충전 시설”을 “충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업무
2. 제8조에 따른 충전료 징수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충전시설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영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영 시행일 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3년
다. 가, 나목 외의 시설: 2년
2.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제3조(영구시설물 축조 사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u>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u>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p> <p>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u>주차단위구획</u>을 말한다.</p> <p>6. 삭제</p> <p>7. ~ 9. (생략)</p> <p>10. “충전료”란 <u>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u>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요금을 말한다.</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서울특별시의회</u> ----- ----- -----.</p> <p>5. ----- ----- <u>구획</u>을 -----.</p> <p>7. ~ 9. (현행과 같음)</p> <p>10. ----- <u>충전시설</u> (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p> <p>제3조(책무) ①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u>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u></p> <p>② <u>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이의 충전시설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u></p> <p>③ <u>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u></p>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 (생략)
-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4.·5. (생략)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이의 충전인프라 관련 통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

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제3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시책)

① 시장-----
-----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
-----.

② -----
-----.

- 1.·2. (현행과 같음)
- 3. 충전시설 -----

4.·5.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 때에는 시민-----
-----.

〈삭 제〉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과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이 조에서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
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 ④ (생략)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
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혼잡통행료(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

3. (생략)

⑥ (생략)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
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
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
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
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 법 제10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설치·운영하는 -----

2. 혼잡통행료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
한 지원) ① -----
-----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
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

② ----- 공동주택 등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

----- 자금 -----

-----.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④ (생략)

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1. 영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③ ----- 연간 사용료 및 -----
-----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
-----.

제7조의2(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
----- . 〈단서 삭제〉

1. 영 제18조의5제1호 -----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 ----- 설치한 -----

② -----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 여부
4. (생략)

제7조의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신 설〉

1. 충전시설-----
2. 전용주차구역의 수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의3(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 자치구,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2. 제1호 이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충전시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7조의 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이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중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이전 또는 철거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시설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관할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9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및 충전 시설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 ⑤ (생 략)

⑥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 설>

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의5(충전시설의 개방) 시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가 구축·운영·지원하는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충전료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충전시설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업무
2. 제8조에 따른 충전료 징수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충전시설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영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영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공공기축시설: 1년
 - 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3년
 - 다. 가, 나목 외의 시설: 2년

2.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제3조(영구시설물 축조 사전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